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어업재해기금 설치 등〉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632호, 제2202633호, 제2202634호)

2024.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개요	1
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2632호)	1
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2633호)	3
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2634호)	5
II.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9
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
2.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III. 관계 부처 의견	24
1. 농림축산식품부	20
2. 기획재정부	21
3. 해양수산부	21
IV. 검토의견	23
1.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농어업재해보험으로의 이관	23
2.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에 농어업재해기금으로의 전출 추가	33
3. 부칙	39
[참고자료]	
참고 1.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23~’24 예결산자료	42
참고 2.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세출항목별 사업 정리	48

I. 개요

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2632호)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8. 8.

다. 회 부 일 : 2024. 8. 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예산상 사유로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책정되어 농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조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 조성·운용되고 있지만, 농어업재해에 따른 피해 전반에 대한 지원 성격이 아닌 재보험사업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는 만큼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 지원은 물론,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안정적인 기금 확보 및 관

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안정적·체계적 기금 확보를 통해 농어업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부터 제4조의8까지 신설).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3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4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2633호)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8. 8.

다. 회 부 일 : 2024. 8. 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농작물 침수·가축 폐사 등 재해 피해로 인하여 재산상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농어업재해에 따른 피해 전반에 대한 지원 성격이 아닌 재보험사업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예산상 사유로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책정되어 농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조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 지원은 물론, 재

보험사업에 따른 보험금 지급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안정적인 기금 확보 및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규정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이관(명시)하여 재해대책 및 재보험사업 등 농어업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삭제 등).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2634호)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8. 8.

다. 회 부 일 : 2024. 8. 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 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예산상 사유로 실제 피해 액보다 적게 책정되어 농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조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농어업 재해재보험기금은 농어업재해에 따른 피해 전반에 대한 지원 성격이 아닌 재보험사업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어 농어업재해 전반에 걸쳐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함에 있어 농어업재해기금으로의 전출금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건의 개정안은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가 있는 “농어업 재해보험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농어업 재해대책법」으로 이관하여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장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 험기금 제21조(기금의 설 치)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해양 수산부장관과 협 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사업에 필 요한 재원에 충 당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재보 험기금(이하 “기 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장 재보험사업 ＜삭 제＞	 ＜신 설＞	제4조의3(농어업재 해기금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양수 산부장관과 협 의하여 공동으 로 재해 대책 및 「농어업재 해보험법」 제2 0조에 따른 재 보험사업(이하 “재보험사업”이 라 한다)에 필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u>제2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 <u>1.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받은 재보험료</u> <u>3.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u> <u>2. 정부,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u> <u>4.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u>	<u><삭 제></u>	<u><신 설></u>	<u>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 <u>제4조의4(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 <u>6.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받은 재보험료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u> <u>1. 정부출연금</u> <u>3.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u> <u>5. 기금의 운용수익금</u>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5. 제2항에 따른 차입금 6. 「농어촌구조개 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7호 에 따라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 계의 농어촌특별 세사업계정으로 부터 받은 전입 금			4. 제2항에 따른 차입금 7. 「농어촌구조 개선 특별회계 법」 제5조제2 항제7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 어촌특별세사업 계정으로 부터 받은 전입금 2. 다른 회계나 다른 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8. 「자유무역협 정 체결에 따 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6 항제7호에 따 른 농어촌상생 협력기금으로 부터 받은 전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삭 제>	입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5(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재해대책 수립 및 재해에 대한 보조 및	입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4조의5(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재해대책 수립 및 재해에 대한 보조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1.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의 지급 2. 제22조제2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보험사업을 유지·개선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제24조(기금의 관			<u>지원</u> 3.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의 지급 2.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해대책 또는 재보험사업을 유지·개선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제4조의6(기금의
	<삭 제>	<신 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u>리·운용) ① 기</u> <u>금은 농림축산식</u> <u>품부장관이 해양</u> <u>수산부장관과 협</u> <u>의하여 관리·운</u> <u>용한다.</u> <u>② 농림축산식품</u> <u>부장관은 해양수</u> <u>산부장관과 협의</u> <u>를 거쳐 기금의</u> <u>관리·운용에 관</u> <u>한 사무의 일부</u> <u>를 농업정책보험</u> <u>금융원에 위탁할</u> <u>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u> <u>항에서 규정한</u> <u>사항 외에 기금</u> <u>의 관리·운용에</u> <u>필요한 사항은</u> <u>대통령령으로 정</u> <u>한다.</u> <u>제25조(기금의 회</u>			<u>관리·운용) ①</u> <u>기금은 농림축</u> <u>산식품부장관이</u> <u>해양수산부장관</u> <u>과 협의하여 관</u> <u>리·운용한다.</u> <u>② 농림축산식</u> <u>품부장관은 해</u> <u>양수산부장관과</u> <u>협의를 거쳐 기</u> <u>금의 관리·운</u> <u>용에 관한 사무</u> <u>의 일부(재보험</u> <u>사업에 한정하</u> <u>다)를 농업정책</u> <u>보험금융원에</u> <u>위탁할 수 있</u> <u>다.</u> <u>③ 제1항 및 제</u> <u>2항에서 규정한</u> <u>사항 외에 기금</u> <u>의 관리·운용</u> <u>에 필요한 사항</u> <u>은 대통령령으</u> <u>로 정한다.</u> <u>제4조의7(기금의</u>
	<삭 제>	<신 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 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6 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u>원인 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 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u>		<u>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 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 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u> <신 설>	<u>제4조의8(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u>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u>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u> <u>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 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u>

2.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안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농어업재해기금으로 재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업 재해관리에 사용할 재원을 확보하려는 내용으로 발의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2호)과 관련한 것임.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 2.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첨단 농림수산기술 및 현장문제 해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6. (현행과 같음)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결기술의 개발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기금에 대한 지원(출연으로 한정한다) 다. 어항(漁港) 건설 라.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2.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補填)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농림어업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지원 나. 농산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 다. 농산어촌 여성 및 아동의 복지 증진 라. 농산어촌의 일자리 창출 지원 마. 농림어업인 및 농작물 재해 관련 지원 바. 농림어업인의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 사.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 아.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3.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가. 농림수산계 학교의 설치·운영 지원 나. 농림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다. 농림어업인에 대한 직업훈련 등 농림어업 외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라. 농림어업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마.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4.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상하수도 정비, 주택 개량, 폐기물 처리, 외딴 곳과 섬 지역 교통 지원 및 그 밖의 생활편의 증진 등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나.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다.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위한 농산어촌의 거점지역 육성 라. 농산어촌의 문화·복지시설 지원 마.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지원 바. 농산어촌에 대한 투자유치 및 향토산업 지원 사. 농산어촌의 관광휴양자원 개발 지원 아.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의 전출금 7. 「<u>농어업재해보험법</u>」 제21조에 따른 <u>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의</u> 전출금 8.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9.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7. 「<u>농어업재해대책법</u>」 제4조의3에 -----<u>농어업재해기금으로의</u>----- -- 8.9.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Ⅲ. 관계 부처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 현재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내 재해대책비, 재해보험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생계안정과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낮다는 입장임.

□ 타부처의 경우에도 이재민 구호, 풍수해보험(행정안전부), 주택 전파·반파 복구비(국토교통부), 어선·어망 복구 및 수산물 입식비(해양수산부) 등을 각각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만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타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임.

□ 또한 자연재해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재해보험사업의 특성상 이와 연계된 재보험금 지급액의 변동폭이 크며, 보험사업 운영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음.

거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재보험 소요는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재해보험 사업자가 납부한 재보험료 등 재원을 사전에 적립하였다가 필요 시 지급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재보험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2. 기획재정부

- 농어업재해기금은 i) 「국가재정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신설 요건(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등)에 부합하지 않고 ii) 기존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iii)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 또한 정부는 기금존치평가를 통해 3년마다 유사기금의 통폐합을 추진 중인데, 기금을 신설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체계 간소화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평가와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해양수산부

- 고수온 등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편성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하여 복구를 지

원 중이므로 별도의 기금 설치는 현행 재해복구제도(재난지원금, 재해보험비)와의 중복성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는 의견임.

IV. 검토의견

1.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농어업재해보험으로의 이관

□ 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써 설치하는 특정자금을 말하는데,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예산의 경직성을 벗어나 탄력적이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한 경우 조성함.

□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재보험료 등을 주요 세입 재원으로 국가가 거대재해로 인한 피해 일부를 재보험¹⁾으로 인수하여 국가 재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등 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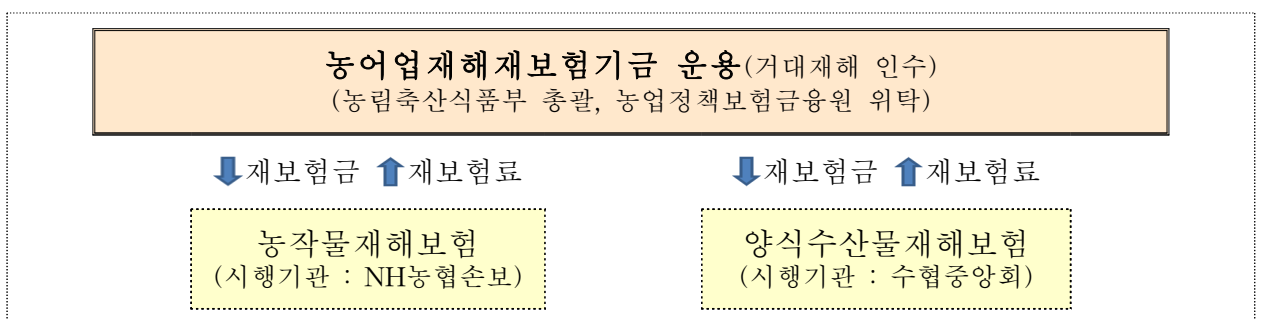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설치배경	○ 농어업재해보험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대재해에 대한 위험의 일부를 국가가 인수하는 국가 재보험기금 설치('05년)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 시작 및 기금 설치('08년)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농작물+양식수산물 재해보험기금) 통합('10년)
설치목적	○ 거대재해로 인한 농어업재해보험 손해를 국가가 재보험으로 보전함으로써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 도모
설치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한다.

1) 재보험 : 보험사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에게 다시 전가하는 보험

구 분	내 용
연 혁	○ 설치 및 운용개시연도 : 2005년
재 원	○ 재보험료 수입(면허료 및 수수료) ○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기타재산이자수입) ○ 재보험기금 운영비 잔액(기타경상이전수입) ○ 농특회계의 농특세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운용·관리	○ 주무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기금관리주체 :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 기금관리방식 : 위탁관리(관리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금용도	○ 재보험금의 지급 ○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 포함)의 지출 ○ 그 밖에 농식품부장관이 해수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보험사업을 유지·개선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2024.9.14. 제출)

□ 국가재보험제도는 농작물재해보험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대상으로 거대재해로 인한 위험의 일부를 국가 재보험에서 인수하는 구조로 이루어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2024.9.14. 제출)

○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재보험사업 참여자(국가, 민간재보험사, NH손해보험)가 보험사업의 손익 상황에 따라 보험사업의 이익은 배분하고, 손실을 분담하는 손익분담방식으로 운영함.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운영 방식>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2024.9.14. 제출)

즉, 이익 발생(보험료 > 보험금) 시 보험사업의 이익은 재보험사업 참여자 간 배분하며 국가분 배분액을 재보험료로 농어업재해재 보험기금으로 수입처리하고, 손실 발생(보험료 < 보험금) 시 국가가 분담하는 금액을 재보험금으로 보험사업자에게 집행하는 구조임.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보험사(수협중앙회)가 인수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4%(손해율 90% 이상) ~ 15%(손해율 70% 미만)]을 재보험료로 국가에 납부하고, 국가는 기준손해율(140%)을 초과하는 손해를 부담하는 구조임.

- 참고로 연도별 재보험료 수입과 재보험금 지급현황은 다음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은 재보험금 지급필요액(1,587억

원) 중 집행한도인 1,200억원을 집행하고, 잔액(387억원)은 기금운
용계획 변경 후 추가집행 예정이라고 함.

<연도별 재보험료 수입 및 재보험금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05~'15	'16	'17	'18	'19	'20	'21	'22	'23	'24.7월	합 계
농작물	재보험료	84,857	25,058	13,818	31,616	32,095	△2	8,402	104,720	169,443	-	470,007
	재보험금	298,289	3,773	574	10,000	265,288	40,179	147,467	-	4	158,198	923,772
양식 수산물	재보험료	2,209	982	2,781	79	7,593	5,790	203	5,334	4,150	1,414	30,535
	재보험금	52,112	11,166	52,828	-	86,063	9,821	2,533	714	115	482	215,834
합계	재보험료	87,066	26,040	16,599	31,695	39,688	5,788	8,605	110,054	173,593	1,414	500,542
	재보험금	350,401	14,939	53,402	10,000	351,351	50,000	150,000	714	119	158,680	1,139,606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2024.9.14. 제출)

□ 개정안은 이러한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 농어업재해에 따른 피
해 전반에 대한 지원 성격이 아닌 재보험사업에 따른 용도로만
100%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한 것임.

즉, 농어업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대신하여 농어업재해기
금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재해대책 수립 및
재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 목적의 농어업재해기금으로 이관하여

야 할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래에서는 기금 신설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 1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 기금 설치의 적합성을 검토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②기획재정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첫째,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과 관련하여 보면,

개정안은 통상적인 기금의 재원(정부출연금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장기차입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외에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재보험료와 재보험금의 회수자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재원과 농어업재해 지원 사업 간 연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기금 주 재원인 재보험료는 재해보험사업자가 거대재해에 대한 위험을 분담하기 위하여 정부에 낸 것이므로 기금의 주 용도인 재해복구비와 연계성이 긴밀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거대재해 발생에 따른 재해대책비의 집행으로 기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해보험금 집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어려울 수 있음.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재해로 인한 큰 손실을 보장하려는 농어업재해보험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음.

<개정안에 따른 농어업재해기금 조성 재원 및 용도>

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의 용도
1. 정부출연금 2. 다른 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4. 차입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받은 재보험료 및 같은 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7.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부터 받은 전입금 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부터 받은 전입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1. 재해대책 수립 및 재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의 지급 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해대책 또는 재보험사업을 유지·개선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 기존의 농어업재해보험기금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굵은 글씨 표시

- 또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에 따르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등으로 조성하고, 농어업인 자녀 대상 교육 장학사업, 의료서비스 확충 등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용도에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민간이 출연한 자금을 타 기금 설치를 위한 전입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출연자의 출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농어촌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고,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공동협력사업,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에 지원되고 있음.

따라서 농어업 분야 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지원하는 기금의 목적과 취지 면에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설립('17.3.30.) 이후 '24.8까지 조성된 기금은 2,449억원임.

매년 1천억원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226억원~455억(8년간(2017~2024) 1천억원 목표 대비 30.6%) 수준으로 조성되고 있음.

< 연도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 (단위: 개/사, 백만원) >

구 분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인 및 단체		합 계
	참여	금액	참여	금액	참여	금액	
2017	14	30,625	2	301	68	39	30,965
2018	30	17,930	9	5,215	27	14	23,159
2019	43	17,543	26	5,045	9	5	22,593
2020	65	20,435	76	17,053	16	107	37,595
2021	94	25,739	70	19,684	5	102	45,525
2022	102	16,398	111	18,792	7	226	35,416
2023	117	13,387	103	16,941	5	166	30,494
2024.8	65	7,185	59	7,851	5	78	15,114
다년협약 잔여분	2	270	3	3,780	-	-	4,050
총 계	132	149,512	207	94,662	130	737	244,912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개요]

- (추진배경) 한·중 FTA 비준 동의 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여야 정합의('15.11.30)에 의해 도입('17.3.30)
- (조성목표)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현물 등으로 매년 1천억원 조성, 10년간 1조원 조성 목표

○ (조성재원 및 용도)

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의 용도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1.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2. 의료서비스의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3. 정주 여건의 개선,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공동협력사업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

- (운영조직)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위원회와 운영본부('17.3.30. 출범)
- (인센티브) 세제혜택(법인세액 공제 등), 동반성장지수·평가 반영, 홍보

- (조성현황) '17년~'24.8월 현재까지 상생기금 출연액 중 공기업·공공기관의 출연액은 61.0%, 민간기업의 출연액은 38.7% 차지
- (기금사업 집행현황: 683개 사업, 1,615.4억원)
 - 농어촌 교육·장학사업(94개 사업, 10,603백만원)
 -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101개 사업, 36,181백만원)
 -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393개 사업, 99,895백만원)
 -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공동협력사업(193개 사업, 41,047백만원)
 - 농협 발행 상품권 사업(9개 사업, 15,139백만원)
 - 홍보·공동사업 운용관리(1개 사업, 20백만원)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2024.8.2. 제출)

□ 둘째,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과 관련하여 보면, 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사업은 지원 여부나 기준 등을 신속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더욱이 현재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별도 사업으로 생계안정과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와 제47조(예산의 이용 및 이체)에 따라 재해대책 재원으로 시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산 사업간 이·전용 등을 통해 충분히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셋째,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과 관련하여, 거대재해가 발생하여 기금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보험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커지게 되어 재해대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그 밖에도 특정 분야의 재해에 대해서만 피해지원 수준의 향상을 위해 기금을 신설한다면 인위 재난²⁾, 사회적 재난³⁾ 등 다른 재난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재난별로 별도의 기금을 신설하는 것이 정부의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2) 인위 재난 : 화재, 붕괴·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3) 사회적 재난 :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의료 등

2.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에 농어업재해기금으로의 전출 추가

- 특별회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별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③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특별회계의 각 계정은 특정 사업이나 목표를 위한 재정 운용을 분리하여 관리함으로써, 해당 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함.

이는 정부가 해당 목적에 따라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는 농어촌특별세 등을 재원(財源)으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등을 위한 보조·융자사업을 추진하는 회계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임업진흥사업계정 및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구분됨.

□ 현재 재해대책비가 집행되고 있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4’의
세입 및 세출 구조는 다음과 같음.

- 세입은 일반회계 등 전입금, 용자 원리금, 예수금 및 기타 수입
금(수입되는 농림수산물에 부과·징수되는 관세액,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
재에 부과·징수되는 부가가치세액, 농지와 산림의 전용에 따르는 전용부
담금 등) 등임.
- 세출은 농산어촌구조개선 및 농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출자·보조·출연 및 용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구
체적으로 농어촌 활력 증진, 농업인 후생 복지증진 및 소득 보
전,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 기
반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세입 및 세출】

세입	세출
1. 제6조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轉入金)	1.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출자·보조·출연 및 용자
2. 다른 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제2항제1호에 따른 용자금의 원리금(元利金)	3. 법률 제4228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7조에 따라 발행된 농어촌발전채권의 원리금 상환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예수금	4. 제1호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4)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입	세출
5. 그 밖의 수입금	다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 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 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으로의 전출금 6. 그 밖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운용·관 리에 필요한 경비

□ 한편, 현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의 전출은 ‘농어촌특별세사 업계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정안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을 농어업재해기금으로 이관함과 동시에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 서 농어업재해기금으로 전출할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약 90%를 차지하는 주된 세입인 농어 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지방 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 여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감면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부가하여 과세함.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입 및 세출】

세입	세출
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 2.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4. 그 밖의 수입금	1.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2.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補塲)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3.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4.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의 전출금 7. 「<u>농어업재해보험법</u>」 제21조에 따른 <u>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u> 8.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9.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비와 재해보험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내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서 집행되고 있고,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과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를 근거로 하여 예산의 부족이 발생할 경우 이·전용과 예비비 등을 활용

용해 지원할 수 있음.

- ☐ 최근 3년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재해대책비 예·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월 한파와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를 위한 부족재원 291억 3,500만원을 예비비를 확보하여 집행한 바 있음.

2023년 9월 호우 및 10월 우박 피해복구비 부족재원은 4억 8,100만원을 전용하여 충당한 바 있음⁵⁾.

【최근 3년간 재해대책비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100,000	100,000	-	16,469	29,135	145,604	145,604 [127,978]	145.6	100.0	-	-
2022	200,000	150,000	-	△22,851	-	127,149	65,039 [28,452]	43.4	51.2	-	62,110
2023	200,000	200,000	-	△29,977	-	170,023	170,023 [156,323]	85.0	100.0	-	-
2024.9	280,000	280,000	-	-	-	280,000	154,889 [58,024]	55.3	55.3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2024.9.14. 제출)

- ☐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과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은 모두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구조를 개선하여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의

5) 2022년은 살처분 보상금, 가축전염병(AI, ASF 등) 확산 방지를 위한 임차비용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재해대책비(보조) 228억 5,100만원을, 2023년에는 가축 살처분 보상금 및 살처분·매몰비용 부족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304억 5,800만원을 각각 살처분보상금으로 이용감하여 집행하였음.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농어업재해기금 설치 시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내 어느 계정으로부터 전출하도록 할지에 대해서는 두 계정의 세입과 세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⁶⁾.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자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중략 >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자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23~’24 예결산자료 및 세출항목별 사업 정리는 이 검토보고서 p46 ~55 <참고 1>, <참고 2> 참조

3. 부칙

□ 세 건의 개정안은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로 규정하고 있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당시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을 개정안에 따른 농어업재해기금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부칙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국가재정법」이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설치 근거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부 칙	<신 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이 법에 따른 농어업재해기금으로 본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1호 중 “「농어업재해보험 법」”을 “「농어업재 해대책법」”으로 한 다.

- 「국가재정법」 제5조는 국가가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로써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같은 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는 부칙개정을 통해 기금설치 근거법률인 「국가재정법」의 별표를 개정하고자 함.

그러나 이러한 개정 방식은 기금 신설을 용이하게 하려는 측면이 있고, 다른 법률의 실체적 규정을 개정하는 측면이 있어 국회상임위원회 및 정부부처의 소관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지양하여야

할 법제 방식으로 보임.⁷⁾

따라서 개정안 심사에 있어 전제가 되는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7) 국회 의정연수원, 「법률안검토 표준교재」, 2024, p298

참고 1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23~' 24 예결산자료

구분	'23예산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총 계	12,069,551	12,279,818	12,789,805	12,279,719
구조개선계정 소계	5,060,491	5,215,655	5,280,241	5,642,368
1031 농업정책보험(구조계정)	829,733	825,258	755,915	894,716
농업재해보험(1031-300)	730,922	726,447	657,104	801,929
농작물재해보험운영비지원(1031-301)	98,811	98,811	98,811	92,787
1033 재해대책	200,000	170,023	280,000	160,000
재해대책비 (1033-302)	200,000	170,023	280,000	160,000
1038 정책금융 보험관리	459,854	470,835	565,673	690,150
농업자금이차보전(1038-301)	451,942	462,923	557,722	681,878
농업정책보험금융원기관운영비 지원(1038-305)	7,912	7,912	7,951	8,272
1067 농업기계장비	34,239	60,870	33,680	10,648
농기계임대(1067-324)	24,800	24,752	32,740	-
첨단무인자동화농업생산시범단지조성(1067-330)	7,512	34,191	-	-
노후농업기계미세먼지저감대책지원(1067-332)	-	-	-	2,082
지능형농기계실증단지구축(1067-333)	1,927	1,927	940	8,566
1150 농식품창업지원	34,518	34,518	47,166	85,485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1150-344)	34,518	34,518	47,166	30,485
농식품모태펀드출자(1150-345)	-	-	-	55,000
2131 식량생산유통지원	51,059	60,159	63,869	75,393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2131-350)	27,233	36,333	-	-
전략작물산업화(2131-351)	-	-	45,264	53,308
고품질쌀유통활성화(2131-430)	23,826	23,826	18,605	22,085
스마트농업육성(2220)	114,196	111,098	93,241	103,197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2220-370)	5,935	5,935	5,935	3,119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2220-371)	-	-	-	1,278
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2220-376)	5,700	5,700	17,980	26,495
스마트팜ICT기자재국가표준확산지원(2220-377)	4,820	4,820	3,815	3,277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2220-380)	8,000	8,000	8,000	8,000
임대형 스마트팜(2220-383)	64,500	64,500	37,000	40,700
스마트팜 실증단지(2220-386)	8,426	7,394	6,104	6,104
데이터기반스마트농업확산지원(2220-390)	6,235	6,235	6,235	4,152
ICT융복합및농림행정통계체계구축(2220-504)	8,514	8,514	8,172	10,072
2240 농업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13,450	12,218	12,444	9,866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2240-312)	5,821	5,821	6,251	4,068
기후변화실태조사(2240-355)	1,352	1,328	1,583	1,583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2240-401)	4,142	4,142	2,816	3,128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조성사업(2240-410)	2,135	927	1,794	1,000
농식품기후정보통합플랫폼구축(정보화)(2240-411)	-	-	-	87
2250 농생명자원사업육성	3,550	3,550	2,272	919

구분	'23예산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도시농업활성화(2250-384)	2,300	2,300	1,022	919
산업식품융합프산업클러스터조성 (경북안동)(2250-386)	1,250	1,250	1,250	-
2260 농기자재산업육성	101,808	103,341	34,846	9,562
농산업수출활성화(2260-375)	1,808	4,541	6,031	9,562
무기질비료가격보조 및수급안정지원(2260-377)	100,000	98,800	28,815	-
2271 친환경농자재	76,510	76,510	26,332	25,837
친환경농자재지원(2271-301)	62,688	62,688	-	-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2271-303)	13,822	13,822	26,332	25,837
2273 친환경농업인프라구축	80	80	-	-
친환경농산물디지털유통정보플랫폼 구축(정보화) (2273-310)	80	80	-	-
3031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농특)	16,931	16,931	17,022	18,688
농업관측(3031-300)	16,931	16,931	17,022	18,688
3032 농산물유통개선 (농특)	48,703	48,703	33,208	37,351
발작물산업육성(3032-338)	9,680	9,680	10,497	11,472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3032-456)	39,032	39,023	22,711	25,879
3041 농산물소비활성화 및 식생활개선(농특)	114,732	136,807	123,649	123,424
농식품소비기반조성(3041-385)	114,732	136,807	123,649	123,424
3050 농식품품질관리(농특)	6,506	6,488	5,819	5,630
국가인증 농식품지원(3050-310)	6,506	6,488	5,819	5,630
3741 동물보호및복지	12,728	10,115	18,182	76,378
동물복지 안전관리 강화(3741-338)	12,328	9,715	12,532	11,764
반려동물산업육성(3741-344)	400	400	3,810	3,511
반려동물연관산업 해외수출산업화(3741-347)	-	-	1,840	6,690
개식용종식전업 폐업지원(3741-400)	-	-	-	54,413
3940 가축방역(농특)	219,874	320,844	259,592	274,018
가축방역대응지원(3940-335)	99,463	106,905	96,433	97,634
살처분보상금(3940-337)	50,215	120,064	81,315	81,315
가축사체처리지원(3940-341)	9,769	5,563	2,930	7,737
가축백신지원(3940-342)	49,917	78,821	65,264	66,983
동물용의약품산업융합지원(3940-349)	2,050	2,048	6,036	13,725
동물용의약품 산업융합지원(융자)(3940-350)	8,460	7,443	7,614	6,624
4031 재해예방(농특)	428,287	398,461	509,707	69,490
배수개선(4031-300)	370,306	340,480	453,525	-
가뭄대비용수개발(4031-304)	11,800	11,800	12,728	11,582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4031-306)	46,181	46,181	43,400	57,908
4034 대단위농업개발 및 시설정비	13,128	13,128	14,606	8,850
농업기반시설치수능력확대(4034-308)	13,128	13,128	14,606	8,850
4038 농업시설개선(농특)	733,282	672,112	815,275	825,067
농촌용수관리(4038-310)	81,450	78,689	69,106	63,333
수리시설개보수(4038-700)	651,832	593,423	746,169	761,734
4046 다목적용수개발	282,200	281,383	251,348	235,682

구분	'23예산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농촌용수개발(4046-300)	282,200	281,383	251,348	235,682
6032 농산물안전성관리	60,119	58,732	60,972	59,801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6032-300)	11,701	11,387	11,325	11,139
농산물안전성조사(6032-301)	25,217	24,756	25,540	25,356
농산물안전성조사(ODA)(6032-302)	54	53	49	-
LMO 및 농산물표시관리(6032-310)	4,812	4,719	5,541	5,433
농산물원산지관리(6032-311)	18,335	17,817	18,517	17,873
6035 품질관리정보화(정보화)	5,897	5,657	6,635	5,941
농산물품질관리정보화(정보화)(6035-517)	5,897	5,657	6,635	5,941
6240 가축검역(농특)	41,881	46,124	35,487	33,460
가축방역(6240-301)	36,804	41,028	32,985	31,319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6240-302)	980	999	802	441
축산물허용물질목록제도지원(6240-303)	4,097	4,097	1,700	1,700
6432 종자산업육성(농특)	32,099	35,417	36,968	42,046
시설현대화및품질관리(종자원)(6432-300)	7,528	8,904	8,600	8,540
품종심사및재배시험(6432-301)	6,398	6,406	6,598	6,227
원원종및원종생산(6432-302)	6,110	6,110	6,328	6,328
종자산업및품종보호(ODA)(6432-303)	76	67	76	-
종자산업 활성화 지원(6432-304)	9,782	11,725	11,045	11,532
과수 무병묘목 생산공급지원(6432-305)	2,205	2,205	2,205	3,300
종자산업 교육인프라구축(6432-307)	-	-	2,116	6,119
6433 종자원정보화(정보화)	1,518	1,461	1,442	1,400
종자원정보화(정보화)(6433-522)	1,518	1,461	1,442	1,400
7019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기관운영비	18,373	18,373	18,467	18,735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기관운영비지원(7019-333)	18,373	18,373	18,467	18,735
7030 농업정보환경지원정보화	3,901	3,894	4,154	4,051
농업정보이용활성화(정보화)(7030-500)	3,901	3,894	4,154	4,051
7031 정책연구개발(R&D)	2,352	2,605	2,117	2,009
정책연구개발사업(R&D)(7031-300)	2,352	2,605	2,117	2,009
7032 농림행정정보화(정보화)	13,975	13,808	34,337	22,905
행정정보화(7032-505)	5,580	5,489	5,352	-
농림축산식품통합관리망(7032-507)	4,195	4,195	3,519	3,186
차세대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정보화)(7032-508)	4,200	4,124	25,466	19,719
7034 농식품통합정보체계구축(정보화)	7,631	7,631	7,225	4,541
농식품통합정보체계구축(정보화)(7034-337)	7,631	7,631	7,225	4,541
7035 농업농촌알리기	7,206	7,187	6,935	7,117
농업가치 및 소비촉진제고(7035-340)	4,427	4,408	4,433	4,455
대한민국농업박람회(7035-343)	2,779	2,779	2,502	2,662
8010 회계간전출	684,614	792,299	702,780	1,277,316

구분	'23예산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전출 (8010-801)	684,614	792,299	700,018	649,24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전출 (8010-803)	-	-	879	49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전출 (8010-804)	-	-	1,883	627,568
8411 회계기금간전출(농특회계)	145,500	145,500	145,500	145,500
축산발전기금 전출(8411-855)	145,500	145,500	145,500	145,500
2832 식품산업육성	43,380	42,748	53,532	74,400
전통발효식품육성(2832-310)	17,246	17,124	18,476	15,610
기능성식품산업육성(2832-330)	6,614	6,614	3,336	3,254
식품산업인프라강화(2832-380)	19,520	19,010	26,245	20,510
푸드테크연구지원 센터구축(2832-401)	-	-	375	4,186
그린바이오산업인프라구축(2832-452)	-	-	5,100	30,840
2835 농식품글로벌비즈니스확대	147,150	148,784	159,308	158,732
농식품해외시장진출(2835-304)	44,973	44,973	49,330	51,289
농식품시장개척(2835-306)	6,434	6,434	6,229	4,804
농식품글로벌비대면마케팅지원(2835-307)	8,282	8,282	9,110	9,910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2835-406)	87,461	89,095	94,639	92,729
2836 식품산업기반조성	37,532	36,787	27,430	24,147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2836-355)	37,532	36,787	27,430	24,147
2837 한식및외식산업육성	15,541	15,216	13,106	19,916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2837-332)	11,373	11,123	10,493	16,631
푸드서비스 선진화(2837-370)	4,168	4,093	2,613	3,285
농특세계정 소계	7,009,060	7,064,163	7,509,564	6,637,351
1031 농업정책보험(농촌계정)	97,231	87,035	89,864	97,231
농업인안전재해보험(1031-368)	97,231	87,035	89,864	97,231
1070 농가소득보전(직불)	21,526	32,375	26,660	21,526
농지이양은퇴직불(1070-302)	21,526	32,375	26,660	21,526
1120 농촌정착지원	55,106	55,106	125,724	150,000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1120-436)	55,106	55,106	95,724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1120-437)	-	-	30,000	150,000
1130 농업인교육지원	50,674	50,665	31,590	30,072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1130-331)	50,674	50,665	31,590	30,072
1140 농촌고용인력지원	12,722	12,722	21,911	27,288
농촌고용인력지원(1140-333)	12,722	12,722	21,911	27,288
1170 귀농귀촌활성화지원	21,254	21,254	7,734	7,232
귀농귀촌활성화지원(1170-407)	21,254	21,254	7,734	7,232
2280 농식품기술개발(농특)	191,127	191,127	130,021	135,813
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R&D) (2280-388)	10,579	10,579	5,670	3,762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R&D)(2280-410)	12,124	12,124	11,411	11,531
농생명산업기술개발(R&D)(2280-412)	212	212	-	-
기술사업화지원(R&D)(2280-421)	25,812	25,812	20,516	25,573

구분	'23예산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반려동물전주산업화기술개발(R&D) (2280-426)	8,960	8,960	7,462	4,501
스마트농산물유통저장기술개발(R&D) (2280-427)	7,772	7,772	-	-
가축질병대응기술고도화지원(R&D)(2280-428)	15,071	15,071	-	-
디지털육종전환기술개발(R&D)(2280-429)	13,395	13,395	11,505	-
농업기반 및 재해대응 기술개발(R&D) (2280-450)	6,367	6,367	3,039	-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R&D) (2280-453)	1,296	1,296	-	-
작물바이러스 및 병해충대응 기술개발(R&D) (2280-472)	9,640	9,640	3,786	-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R&D) (2280-474)	7,320	7,320	-	-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R&D) (2280-481)	20,140	20,140	15,779	16,636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R&D) (2280-483)	9,956	9,956	-	-
노지분야스마트농업기술단기고도화(R&D) (2280-491)	16,300	16,300	13,933	-
친환경동력원적용농기계기술개발(R&D) (2280-492)	9,788	9,788	8,809	6,750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기획평가관리비(R&D) (2280-493)	6,363	6,363	6,028	6,187
발농업기계화촉진기술개발(R&D)(2280-497)	4,875	4,875	5,325	5,325
농업분야창의도전형용 복합모델개발(R&D) (2280-500)	750	750	-	-
국제협력기반수출농업경쟁력강화기술개발(R&D) (2280-501)	4,407	4,407	5,288	6,938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양성(R&D) (2280-503)	-	-	4,500	6,000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술기반구축(R&D) (2280-504)	-	-	1,500	3,050
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기술개발 (R&D) (2280-505)	-	-	5,470	8,098
첨단정밀육종활용고부가산업화기술개발(R&D) (2280-514)	-	-	-	6,375
K-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R&D) (2280-523)	-	-	-	6,150
경제동물용의약품 및 의료기기국산화기술개발(R&D) (2280-524)	-	-	-	6,375
노지스마트농업활용모델개발(R&D) (2280-526)	-	-	-	6,750
기후변화대응지능형농업기반관리기술개발(R&D) (2280-530)	-	-	-	4,312

구분	'23예산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자원순환형그린바이오기술개발(R&D) (2280-532)	-	-	-	1,500
3031 농산물가격안정및수급조절(농특)	-	-	6,972	-
시설농가면세유유가연동보조금한시지원 (3031-306)	-	-	6,972	-
3041농산물소재활성화및 식생활 개선	14,800	13,651	14,800	38,100
농식품바우처(3041-385)	14,800	13,651	14,800	38,100
4130 농촌일자리및경제활성화	35,257	35,179	43,315	42,468
농촌경제활성화지원(4130-300)	-	-	25,276	25,062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4130-419)	14,375	14,368	-	-
국립농업박물관운영(4130-427)	16,714	16,714	18,039	17,406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 도입 모델(4130-445)	4,168	4,097	-	-
4135 농촌복지증진	476,568	475,226	381,491	379,680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4135-350)	-	-	28,795	28,782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4135-366)	401,754	401,754	348,396	344,398
취약농가인력지원(4135-367)	10,303	10,303	-	-
농업인자녀및농업후계인력장학금 지원(4135-384)	15,501	15,501	-	-
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4135-394)	36,683	35,041	-	-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4135-397)	1,990	1,990	4,300	6,500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4135-405)	10,337	10,637	-	-
4160 농촌공간및정주여건개선	95,524	93,725	97,791	148,457
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4160-375)	600	600	-	-
농촌보육여건개선(4160-386)	4,416	4,416	-	-
농업유산발굴및보전관리지원(4160-411)	2,629	2,529	-	-
농촌공간계획및재생지원(4160-431)	83,079	81,380	82,591	115,668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4160-433)	4,800	4,800	15,200	30,800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4160-448)	-	-	-	1,989
6034 농업경영체등록	27,825	27,691	28,979	29,459
농업경영체등록(6034-362)	27,825	27,691	28,979	29,459
8412 회계기금간 전출	2,821,872	2,671,872	2,987,213	2,987,213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전출 (8412-845)	2,821,872	2,671,872	2,987,213	2,987,213
9303 구조개선계정전출	3,049,539	3,258,500	3,477,888	2,501,932
구조개선사업계정 전출(9303-935)	3,049,539	3,258,500	3,477,888	2,501,932
2810 식품기술개발	38,035	38,035	37,611	40,880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R&D)(2810-420)	38,035	38,035	37,611	40,880

참고 2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세출항목별 사업 정리

계정명	세출 항목	해당사업
구조개선 사업계정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용자	농업재해보험(1031-300) 농작물재해보험운영비지원(1031-301) 재해대책비(1033-302) 농업자금이차보전(1038-301) 농업정책보험금융원기관운영비 지원(1038-305) 농기계임대(1067-324) 첨단무인자동화농업생산시범단지조성(1067-330) 노후농업기계미세먼지저감대책지원(1067-332) 지능형농기계실증단지구축(1067-333)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1150-344) 농식품모태펀드출자(1150-345)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2131-350) 전략작물산업화(2131-351) 고품질쌀유통활성화(2131-430)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2220-370)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2220-371) 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2220-376) 스마트팜ICT기자재국가표준확산지원(2220-377)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2220-380) 임대형 스마트팜(2220-383) 스마트팜 실증단지(2220-386) 데이터기반스마트농업확산지원(2220-390) ICT융복합및농림행정통계체계구축(2220-504)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2240-312) 기후변화실태조사(2240-355)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2240-401)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조성사업(2240-410) 농식품기후정보통합플랫폼구축(정보화)(2240-411) 도시농업활성화(2250-384) 산업식품융합프산업클러스터조성(경북안동)(2250-386) 농산업수출활성화(2260-375) 무기질비료가격보조및수급안정지원(2260-377) 친환경농자재지원(2271-301)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2271-303) 친환경농산물디지털유통정보플랫폼 구축(정보화)(2273-310) 농업관측(3031-300) 발작물산업육성(3032-338)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3032-456) 농식품소비기반조성(3041-385)

계정명	세출 항목	해당사업
		국가인증 농식품지원(3050-310) 동물복지 안전관리 강화(3741-338) 반려동물산업육성(3741-344) 반려동물연관산업 해외수출산업화(3741-347) 개식용종식전업 폐업지원(3741-400) 가축방역대응지원(3940-335) 살처분보상금(3940-337) 가축사체처리지원(3940-341) 가축백신지원(3940-342)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3940-349) 동물용의약품 산업종합지원(융자)(3940-350) 배수개선(4031-300) 가뭄대비용수개발(4031-304)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4031-306) 농업기반시설치수능력확대(4034-308) 농촌용수관리(4038-310) 수리시설개보수(4038-700) 농촌용수개발(4046-300)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6032-300) 농산물안전성조사(6032-301) 농산물안전성조사(ODA)(6032-302) LMO 및 농산물표시관리(6032-310) 농산물원산지관리(6032-311) 농산물품질관리정보화(정보화)(6035-517) 가축방역(6240-301)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6240-302) 축산물허용물질목록제도지원(6240-303) 시설현대화및품질관리(종자원)(6432-300) 품종심사및재배시험(6432-301) 원원종및원종생산(6432-302) 종자산업및품종보호(ODA)(6432-303) 종자산업 활성화 지원(6432-304) 과수 무병묘목 생산공급지원(6432-305) 종자산업 교육인프라구축(6432-307) 종자원정보화(정보화)(6433-522)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기관운영비지원(7019-333) 농업정보이용활성화(정보화)(7030-500) 정책연구개발사업(R&D)(7031-300) 행정정보화(7032-505) 농림축산식품통합관리망(7032-507) 차세대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정보화)(7032-508) 농식품통합정보체계구축(정보화)(7034-337) 농업가치 및 소비촉진제고(7035-340) 대한민국농업박람회(7035-343)

계정명	세출 항목	해당사업
		전통발효식품육성(2832-310) 기능성식품산업육성(2832-330) 식품산업인프라강화(2832-380) 푸드테크연구지원 센터구축(2832-401) 그린바이오산업인프라구축(2832-452) 농식품해외시장진출(2835-304) 농식품시장개척(2835-306) 농식품글로벌비대면마케팅지원(2835-307)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2835-406)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2836-355)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2837-332) 푸드서비스 선진화(2837-37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전출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전출(8010-8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전출(8010-80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전출(8010-804)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기금 전출금	'23~'24년 세출 없음
농어촌 특별세 사업계정	농림수산업 경쟁력강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1120-43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1120-437) 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R&D)(2280-388)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R&D)(2280-410) 농생명산업기술개발(R&D)(2280-412) 기술사업화지원(R&D)(2280-421)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R&D)(2280-426) 스마트농산물유통저장기술개발(R&D)(2280-427) 가축질병대응기술고도화지원(R&D)(2280-428) 디지털육종전환기술개발(R&D)(2280-429) 농업기반 및 재해대응 기술개발(R&D)(2280-450)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R&D)(2280-453) 작물바이러스 및 병해충대응 기술개발(R&D)(2280-472)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R&D)(2280-474)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R&D)(2280-481)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R&D)(2280-483) 노지분야스마트농업기술단기고도화(R&D)(2280-491) 친환경동력원적용농기계기술개발(R&D)(2280-492)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기획평가관리비(R&D)(2280-493) 발농업기계화촉진기술개발(R&D)(2280-497) 농업분야창의도전형융복합모델개발(R&D)(2280-500) 국제협력기반수출농업경쟁력강화기술개발(R&D)(2280-501)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양성(R&D)(2280-503)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술기반구축(R&D)(2280-504) 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기술개발(R&D)(2280-505) 첨단정밀육종활용고부가산업화기술개발(R&D)(2280-514) K-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R&D)(2280-523)

계정명	세출 항목	해당사업
		경제동물용의약품 및 의료기기국산화기술개발(R&D)(2280-524) 노지스마트농업활용모델개발(R&D)(2280-526) 기후변화대응지능형농업기반관리기술개발(R&D)(2280-530) 자원순환형그린바이오기술개발(R&D)(2280-532)
	농림어업인의 후생복지 증진 및 소득보전	농업인안전재해보험(1031-368) 농지이양은퇴직불(1070-302) 농촌고용인력지원(1140-333) 시설농가면세유유가연동보조금한시지원(3031-306) 농식품바우처(3041-385)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4135-350)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4135-366) 취약농가인력지원(4135-367) 농업인자녀및농업후계인력장학금 지원(4135-384) 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4135-394)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4135-397)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4135-405) 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4160-375) 농촌보육여건개선(4160-386) 농업유산발굴및보전관리지원(4160-411) 농촌공간계획및재생지원(4160-431)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4160-433)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4160-448) 농업경영체등록(6034-362)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기회 보장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1130-331) 귀농귀촌활성화지원(1170-407)
	농산어촌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	농촌경제활성화지원(4130-300)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4130-419) 국립농업박물관운영(4130-427)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 도입 모델(4130-445)
	지역균형발전특별 회계 지역자율계정 전출금	'23~'24년 세출 없음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기금 전출금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전출(8412-845)
	농어업재해보험 기금 전출	'23~'24년 세출 없음

문 의 처

02)6788-5414